창작자 수익 보상 표준조항(안)

※ 영화 연출계약서 작성 시 아래 내용 포함

※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활용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되, 수익 비례 보상이 표준계약서 권고 내용에 맞게 포함된 경우 표준조항 사용으로 간주

1. 용어 정의 조항 : 계약서 작성 시 용어 정의 조항에 반영하거나, 용어 정의 조항이 없다면 창작자 수익 보상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합의 약정 필요

제0조(용어의 정의)

(0) 창작자 수익 보상: '본건 영화'의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,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'감독' 혹은 '감독이 지정하는 단체'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의미한다.

2. 보상 지급 규정(수익 배분 관련) 조항 : 계약서 작성 시 보상 지급 규정 또는 수익 배분 관련 조항에 반영

제0조(창작자 수익 보상 분배)

(1) 창작자 수익 보상으로서 순수익의 ( )% 을 제0조에서 정한 각 정산기준일 중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정산기준일에 '감독' 혹은 '감독이 지정하는 단체'에 분배한다. 단, 창작자 수익 보상을 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0%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.